「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Ⅰ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시행('19.1.1)에 따라 산업계는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한 살생물제 승인이행 준비가 필요한 상황

- '24년 승인유예 살생물물질*은 '23년 6월 내 승인신청, 승인된 살생물물질 함유 살생물제품** 승인은 '23년 9월 내 승인신청을 권고

* 살균제, 목재용 보존제 및 기타 (무)척추동물 제거제

** 살균제, 살서제, 살충제, 살조제, 기피제

○ 이에 환경부는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**중소기업**이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**「2023년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** 사업 실시

□ 운영절차

모집공고	신청·접수	검토·확인	선정·지원
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 실시	신청·접수	지원요건 적격여부 검토	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
협회	중소기업	협회	협회

□ 지원범위 ※세부 지원사업별 지원범위 참조

○ (살생물물질) 성분분석 및 효과·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

○ (살생물제품) 성분분석(제품 안정성시험 포함) 및 효과·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

□ 신청방법

○ (신청기간) 모집공고일로부터 **예산 소진시 까지**

○ (신청방법) E-mail 접수(kbpr@kcma.or.kr)

○ (신청서류) 세부 지원사업별 '신청서류' 참조

□ 선정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**(선정방법)**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**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** 후 선정(접수 시간 기준)

※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**(선정결과)** 월별로 선정하며,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)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(매월 둘째 주)

○ **(지원금 지급)**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된 협의체(기업)에 지원금 지급(매월 둘째 주)

□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반드시 모집공고문 및 **“Ⅳ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”**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사업 신청

□ 문의처

담당기관	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제품관리팀)	02-3019- 6781, 6741, 6747

Ⅱ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

□ 지원대상

○ **'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**을 승인신청한 자 가운데 아래 요건을 **모두 충족**하는 자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중소기업에 해당**하는 중소기업
-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협약당사자로 포함된 '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**제품유형협의체(단독제출 포함)**
- 살생물물질 **승인신청자료로써 생산·제출 완료**된 **시험자료**

지원 제한 사항

① (성분분석) 협의체별 1개 물질을 지원하며, 국내 제조 물질 우선 지원
② (성분분석) 기존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물질의 경우 지원 제외
③ (효과·효능)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M 1701에 등재된 목재용 보존제의 경우 지원 제외
④ 대·중견·외국계기업 및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지원 제외

□ 지원범위

○ (지원항목) 국내·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분분석 및 효과·효능 시험자료 생산 비용 **일부 지원**

○ (지원범위)

- (성분분석) **협의체 내 제조원별**에 대한 성분분석 시험지원
- (효과·효능) **제품유형협의체 당 1회**만 지원하며 (시험종)×(방제방법)에 따라 지원

□ 지원단가 ※ 모든 지원단가는 부가세를 포함

○ **성분분석 비용 지원**

- 불순물·부산물은 100만원/1개로 최대 7개까지 지원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최대지원금	지원비율		세부 단가기준	
		소상공인·소기업	중기업	주성분	불순·부산물
성분분석	1,500	실비의 최대 90%	실비의 최대 70%	800	700

○ 효과·효능 비용 지원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시험종당 최대 지원금	최대 지원금	지원비율	
				중소기업만 포함된 협의체*	그외
살생물물질	살균제	1,200	1,200	실비의 최대 90%	실비의 최대 70%
	목재용 보존제	160	320		
	기타 척추동물제거제	1,200	2,400		
	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	800	2,400		
대표예시제품	살균제	1,500	1,500		
	목재용 보존제	200	400		
	기타 척추동물제거제	1,500	3,000		
	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	1,000	3,000		

* 중소기업 단독제출물질인 경우 실비의 최대 90% 적용

** 대표예시제품이 살생물물질과 동일한 경우 살생물물질의 지원금 지급

□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	[붙임 1] 참고
2	중소기업확인서 - 협의체 :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- 개별기업 : 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(http://sminfo.mss.go.kr)
3	협의체 협약서	공동자료 제출 구성원 전체 날인본 필수
4	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	[붙임 2] 참고
5	시험계약서(협의체(기업)-시험기관) - 필요시 상세사항이 반영된 시험 견적 등 추가 제출	'컨설팅사-시험기관'간 시험계약서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요
6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	신청 후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최종본으로 재제출
7*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	전자세금계산서(청구) 제출 시 이체영수증첨부
* 해당 기관에서 지출되는 다른 금액이 포함된 경우, 지원 신청과 관련된 부분의 구분 필요(이체영수증 포함)		
8	저작재산권 관련 서류(실물서류 제출 필수) * 실물서류는 준비하되 선정안내 이후 발송(개별 안내, 안내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 취소)	[붙임 4] 및 [붙임 5] ※ 저작재산권 등록 관련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내 참고하여 제출
9	사업자등록증	정부기관 발급본
10	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	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

Ⅲ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

□ 지원대상

○ 승인받은 **살생물물질**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자 가운데 아래 요건을 **모두 충족**하는 자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중소기업에 해당**하는 중소기업
- 살생물제품 **승인신청자료로써 생산·제출 완료**된 **시험자료**

지원 제한 사항

① **업체별 1개 제품을 지원**하며, 기존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제품(대표예시제품 지원 포함)의 경우 지원 제외
② 대·중견·외국계기업 및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지원 제외

□ 지원범위

○ (지원항목) 국내·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분분석 및 효과·효능 시험자료 생산 비용 **일부 지원**

○ (지원범위)

- (성분분석) **업체별 1개 제품**을 지원하며, **제품의 안정성시험을 포함**하여 지원
- (효과·효능) 업체별 1개 제품을 지원하며, 모의사용 시험 조건 하에서 (시험종)×(방제방법)에 따라 지원

□ 지원단가 ※ 모든 지원단가는 부가세를 포함

○ 성분분석 비용 지원

- 지원단가는 1개 중소기업 당 **최대 1,200만원**이며, 안정성시험(장기보존, 가속저장, 저온저장)을 포함하여 지원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최대지원금 (만원)	지원비율	
		중기업	소상공인·소기업
성분분석	**1,200만원/제품**	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실비의 최대 70%	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실비의 최대 90%

○ 효과·효능 비용 지원(**모의사용 시험 조건만 지원**)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시험종당 최대 지원금	최대 지원금	지원비율	
			소기업·소상공인	중기업
살균제*	-	1,500	실비의 최대 90%	실비의 최대 70%
살충제	1,000	5,000		
살서제	1,500	3,000		
살조(藻)제	-	400		
기피제	1,000	3,000		

* 살균제 및 살조제 효과효능 시험자료는 시험대상 생물체 종·수에 무관하게 최대 비용 내에서 지원

□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	[붙임 1] 참고
2	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(http://sminfo.mss.go.kr)
3	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	[붙임 3] 참고
4	시험계약서(기업-시험기관) - 필요시 상세사항이 반영된 시험 견적 등 추가 제출	'컨설팅사-시험기관'간 시험계약서 제출 시 기업 소유권 증빙 필요
5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	신청 후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최종본으로 재제출
6*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	전자세금계산서(청구) 제출 시 이체영수증첨부
	* 해당 기관에서 지출되는 다른 금액이 포함된 경우, 지원 신청과 관련된 부분의 구분 필요(이체영수증 포함)	
7	저작재산권 관련 서류(실물서류 제출 필수) * 실물서류는 준비하되 선정안내 이후 발송(개별 안내, 안내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 취소)	[붙임 4] 및 [붙임 5] ※ 저작재산권 등록 관련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내 참고하여 제출
8	사업자등록증	정부기관 발급본
9	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	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

Ⅳ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○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지원

○ 승인비용 지원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협의체(기업)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,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

※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(기업)임이 증명되어야하고,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

※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,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

○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음

○ 협약당사자(기업)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, 정부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

○ 협약당사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(판매금액, 구매자 정보 등)을 보고하여야 함

○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확인 시 감액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

○ 시험기관*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승인신청 접수번호 등**을 협회에 제출해야함

* 성분분석 비용지원의 경우 ISO/IEC 17025 또는 GLP 등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결과에 한하여 인정

** 승인신청 접수번호, 평가 시작통지서 또는 완결성 검토 결과 증빙자료

○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

○ 제출서류 보완 및 신청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○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
○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함

○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(기업)는 담당기관의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,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(승인포기)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○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○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및 개별기업의 경우 추후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
※ 붙임 : 1. 지원신청서.
2.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.
3.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.
4. 양도사실 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
5. 공동등록의무자 목록지. 끝.

붙임 1 지원신청서

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참여 신청서

신청인 정보	기 업 명		참 여 형 태	☐ 대표자(단독)	☐ 개별기업
	사업자등록번호		기 업 규 모	*대기업 / 중기업 / 소기업·소상공인*	
	주 소	(우편번호: -)			
	담 당 자	부서 :	직위 :	성명 :	
		전화 :	이메일:		
신청사항	살생물물질 지원		승인신청 서류 접수번호(CHEMP)		
	신청분야 (중복가능)	☐ ① 성분분석 시험비용 지원		☐ ② 효과효능 시험비용 지원	
	CAS No.		컨설팅기관명		
	제품유형		시험기관명		
	(협약당사자) 중소기업수/ 전체 구성원수	*00(중소기업수) / 00(전체구성원수)*	실제생산비용(원) * 부가세 포함		
	살생물제품 지원		승인신청 서류 접수번호(CHEMP)		
	신청분야 (중복가능)	☐ ① 성분분석 시험비용 지원		☐ ② 효과효능 시험비용 지원	
	제품명		컨설팅기관명		
	제품유형		시험기관명		
	사용된 살생물물질 CAS No.		실제생산비용(원) * 부가세 포함		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명, 주소, e-mail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-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본 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「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」에 참여하고자 이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첨 부 서 류		
살생물물질 지원	1	지원신청서
	2	중소기업확인서 - 협의체 : 협의체 내 중소기업인 적극적 구성원 전원 - 단독기업 : 중소기업확인서
	3	협의체 협약서
	4	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
	5	시험계약서(협의체(기업)-시험기관) - 필요시 상세사항이 반영된 시험 견적 등 추가 제출
	6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
	7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
	8	저작재산권 관련 서류
	9	사업자등록증
	10	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
살생물제품 지원	1	지원신청서
	2	중소기업확인서
	3	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
	4	시험계약서(기업-시험기관) - 필요시 상세사항이 반영된 시험 견적 등 추가 제출
	5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
	6	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
	7	저작재산권 관련 서류
	8	사업자등록증
	9	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

붙임 2 **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**

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

신청인은 「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①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지원
② 승인비용 지원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협의체(단독기업)가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,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
※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(기업)임이 증명되어야하고,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
※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,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
③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음
④ 협약당사자(단독기업)는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, 정부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
⑤ 협약당사자(단독기업)는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(판매금액, 구매자 정보 등)을 보고하여야 함
⑥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확인 시 감액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
⑦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승인신청 접수번호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함
⑧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
⑨ 제출서류 보완 및 신청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⑩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⑪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함
⑫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(단독기업)는 담당기관의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,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(승인포기)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⑬ 그 외에 모집공고상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름

2023년 월 일

상호명 :

대표자 : (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붙임 3 **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**

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동의서

신청인은 「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①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지원
② 승인비용 지원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,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
※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 되어야하고,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
※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,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
③ 저작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는 화학제품 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음
④ 기업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, 정부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서를 구매자로부터 확인 후 판매하여야 함
⑤ 기업은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(판매금액, 구매자 정보 등)을 보고하여야 함
⑥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확인 시 감액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
⑦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승인신청 접수번호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함
⑧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
⑨ 제출서류 보완 및 신청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⑩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⑪ 기업은 담당기관의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,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포기(승인포기)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⑫ 그 외에 모집공고상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름

2023년 월 일

상호명 :
대표자 : (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붙임 4 **양도사실 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**

양도사실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

[양수인]

성명(법인명): 환경부 (서명 또는 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:

전화번호:

주소:

본인은 아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고, 상기자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단독으로 신청함을 승낙합니다.

[저작물 제호]

[계 약 명]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

[계약 종류] ☑ 일반 계약 / ☐ 도급(용역)계약(실제권리양도일:)

[양도 금액] ₩_____

[계약 일자] 년 월 일

[양도 범위(대상 권리)]

☐ 저작재산권 전부 -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안함

☐ 저작재산권 전부 -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

☑ 저작재산권 일부 : 양도인의 저작재산권 보유지분 100% 중 % 양도,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

년 월 일

[양도인]

성명(법인명) : (서명 또는 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전화번호:

주소:

붙임 5 공동등록의무자 목록지

☐ 공동저작자 ☐ 공동상속인
☐ 공동저작인접권자 ☐ 공동등록권리자 목록
☐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☑ 공동등록의무자

번호	성명 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지분 (%)	주소	국적	전화번호 (휴대전화)	전자우편 주소
1	(서명 또는 인)						
2	(서명 또는 인)						
3	(서명 또는 인)						
4	(서명 또는 인)						
5	(서명 또는 인)						
6	(서명 또는 인)						
7	(서명 또는 인)						
8	(서명 또는 인)						
9	(서명 또는 인)						
10	(서명 또는 인)						